

맥쿼리 뉴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



효력발생예정일 : 2018 년 05 월 23 일

투자설명서 변경

1. 기재 정정 사유
 - 1) 연금저축과세 내용 업데이트
 - 2) 변동성 수치 및 위험등급 변경 (3 등급-> 2 등급)
 - 3) 결산 재무정보 업데이트 등

| 항목 | 변경사유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---|
| 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| | | |
| 5. 운용전문인력 | 가. 정보 업데이트 | - | <u>운용현황 업데이트</u> |
| 10.라.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| 이 정보 업데이트 |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<u>14.90%</u> 로,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이 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<u>다소 높은 위험</u>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닌 것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|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<u>15.78%</u> 로,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이 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2 등급 에 해당되는 <u>높은 위험</u>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닌 것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|
| 13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| 나. 정보업데이트 | - | <u>업데이트</u> |
| 14. 나. 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| 연금저축과세 내용 업데이트 | (세액공제) 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이내에서 13.2% 세액공제 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 년 1 월 1 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| (세액공제) <u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</u> <u>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</u> |

| 항목 | 변경사유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|------------|---|--|
| | | (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사유)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요양 |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다만,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 [2017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] (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사유)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소득세법 제 50 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)의 3 개월 이상 요양 |
| 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| | | |
| 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| 결산 업데이트 | 재무정보 - | 업데이트 |
| 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| | | |
| 1. 가. 회사개요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규모 | 정보 업데이트 | - | 업데이트 |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

1. 기재 정정 사유

- 1) 결산 재무정보 업데이트 등

| 항목 | 변경사유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
| 간이투자설명서 전반 | 정보 업데이트 | - | 재무정보 등 업데이트 |